

2018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 결정

(7.15.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통과)

1.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액

결정단위	최저임금액
시간급 기준	8,350원 (2018년 대비 10.9%인상)
일 환산액(8시간)	66,800원
월 환산액(209시간, 주휴포함)	1,745,150원

2.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: 전 사업장 동일적용

3. 최저임금 적용 기간 : 2019. 1. 1. ~ 2019. 12. 31.

4. 최저임금 산입범위(5.28. 국회본회의 통과)

항목	세 부 내 용
최저임금 산입범위	원칙 :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산입(算入) 예외 : 법률상 제외임금
최저임금 제외임금	1. 근로기준법에 따른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(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, 근속수당, 결혼수당 등) ②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(연차휴가 근로수당, 유급휴가 근로수당, 유급휴일 근로수당, 연장시간근로·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, 야간근로 가산임금, 일·숙직 수당 등) 2. 상여금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. 식비, 숙박비, 교통비 등 복리후생 임금 중 통화 이외의 임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 중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기준 월 환산액의 100분의 7 해당 부분
최저임금 산입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	- 사용자가 최저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(장)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,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청취 ※ 의견청취위반 : 500만원 이하 벌금
시행일	- 2019년 1월 1일부터